

의안번호	2201827
의 퇴 인	곽규택의원
회 답 일	2024. 7. 19.
추계번호	24B165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3조제1항제14호의2 신설(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점용·사용료 감면 사유 추가	공유수면관리청은 점용·사용허가나 공유수면¹⁾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8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사용료”라 함)를 징수하여야 함.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1항) 14의2. 업종의 특성상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점용·사용하는 경우	재량규정 (수입감소)

1)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13조제14호의2 신설(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점용료·사용료 감면(안 제13조제14호의2 신설)

□ 개정안은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공유수면관리청²⁾이 점용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감소가 예상됨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공유수면관리청은 현행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징수중

— 사업 특성·정책적 감면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액 또는 일정비율 감면

※ [참고자료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계 및 최근 5년간 점용료·사용료 현황,
[참고자료 2] 중소·중견·대기업 비교(요약) 참고

[표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산정 및 감면 방식
(「공유수면법」 제13조, 시행령 제13조·제14조, 시행규칙 별표2)

구분	산정 또는 감면방식
공간 점용	• 인접한 토지 또는 가장 가까운 토지가격(개별공시지가)*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점용·사용 허가 대상 행위별로 점용·사용료 요율 차등 적용 * (인공구조물·건축물) 3%, (해저터널·케이블 등) 0.5%, (공유수면과 맞닿지 않는 수면상부) 1.5%, (조선용 선가대, 선박수리 시설물) 1%, (식물재배·벌채) 0.5% 등

2)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지방관리항) 시·도지사, (그 외) 시·군·구청장

구분	산정 또는 감면방식		
자원 사용	• 공유수면의 자원을 사용하는 일부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 적용 - (흙·돌·모래 등) 가격조사기관 등이 매년 조사한 도매가격 평균치의 30% * 다만, 해저광물의 경우 평균 도매가격 산정이 어려우므로, 인근지가 기준(15%) 적용 - (물) 전기사업용수는 m³/초당 연 20만원, 기타 용수는 관 지름에 따라 달리 적용		
감면	• 사업 특성·정책적 감면 필요성 등을 고려, 전액 또는 일정비율 감면		
	감면율	행위종류	근거법률
	100%	국가·지자체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점용·사용	—
		오탁방지망, 방제설비 등 설치	해양환경관리법 등
		사실향로표지 설치	향로표지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시행	경제자유구역법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 시행	민간투자법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	산업입지법
		제주투자진흥구역 개발사업 시행	제주특별자치도법
		어업구역 내 면허·허가·신고어업	수산업법
		수산종자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본인 소유의 포락지·간석지 토지 조성	공유수면법
	50%	마리나 항만구역 내 마리나 항만시설, 마리나 산업단지 조성·운영	마리나항만법
		신·재생에너지 설비	신재생에너지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 소재 업종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협의한 업종 (조선업·조선기자재업으로 협의('18.8))	지역산업위기대응법, 고용정책특별법
	기타 (고사비율)	재해 등으로 본래 점용·사용 목적 미달성 시 * '22년, COVID-19 피해회복을 위하여 25% 감면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표 2] 최근 5년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 현황

(단위: 건, m², 천원)

연도	2018	2019	2020	2021	2022
허가건수	10,344	9,033	9,171	10,865	9,879
허가면적	24,629,984	45,506,853	49,137,332	64,030,950	106,138,793
점용료·사용료 부과액	81,186,984	103,247,170	56,562,473	52,832,322	101,342,233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개정안에 따른 수입감소 규모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중소·중견기업인 사업자로서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사업자, 해당 사업자가 점용·사용 면적,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 단가 및 감면율 등등의 자료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음

$$\begin{aligned} \circ \text{수입감소 규모} &= \sum_t (\text{넓은 면적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감면액})_t \\ &= \sum_{i,t} [(\text{넓은 면적 공유수면 점용·사용면적} \times \text{점용·사용료 단가} \\ &\quad \times \text{감면율})]_{i,j,t} \end{aligned}$$

- 이때, t 는 추계기간 5년,
 i 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j 는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업종

-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업종 및 해당 업종에서 점용·사용중인 면적, 해당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여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사용료 단가 및 감면율 등의 예측이 불가하여 합리적인 수입감소 규모 추계에 한계가 있음

- 참고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점용 주체별 점용 면적은 같은 업종 내에서 사업 규모, 개별 사업자의 특성 등에 따라 변동폭이 매우 크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할 필요가 있는 업종’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의견임

- 또한 현행 점용료·사용료 체계는 공간을 점용하는 형태(구조물 종류·형태)별로 점용료·사용료 요율을 구별하는 체계로, 특정 업종별로 구분하여 징수관리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적 임대료와 같이 업종·기업 규모 등에 관계없이 일관적 요율체계를 적용하고 있음

- 즉 점용 주체가 영위하는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구분하여 점용료·사용료등을 관리하고 있지 않음

* 점용·사용 허가 신청 시에도 업종·기업 규모를 기입하지 않으며, 이는 도로·하천

등 유사한 제도로 동일하게 적용 중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유미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계 및 최근 5년간 점용료·사용료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체계

- (대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공유수면법」”) 제8조제1항 각 호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공유수면법」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료 납부
- (절차) 공유수면관리청*이 납부자에게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여 징수하고, 미납 시 국세·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 (배타적경제수역, 국가관리항) 해양수산부장관(지방해양수산청장 위임), (지방관리항) 시·도지사, (그 외) 시·군·구청장
- (귀속)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점용료·사용료는 국가 수입,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소관 점용료·사용료는 해당 지자체 수입
 - － 다만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골재·광물채취의 경우 그 점용료·사용료의 50%를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시·도 수입으로 귀속하고, 시·도지사는 그 수입금을 해당 구역 인근 3개 이내 시·군·구에 교부(수산자원 조성·수산업 발전 목적 사용)

3) 법 제8조(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매립면허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2.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공유수면 이하로 굴착(掘鑿)하는 행위
3.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浚渫)하거나 굴착하는 행위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5. 공유수면으로부터 물을 끌어들이거나 공유수면으로 물을 내보내는 행위.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행위
7.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8.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9. 점용·사용허가를 받아 설치된 시설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시설물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10. 공유수면에서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채취하는 행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 최근 5년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현황

연도	공유수면 관리청	허가건수 (건)	허가면적 (㎡)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천원)
2018	지방청	511	4,064,211	8,103,761
	지자체	9,831	20,507,041	72,716,132
	새만금개발청	2	58,732	367,091
	합계	10,344	24,629,984	81,186,984
2019	지방청	433	15,397,500	9,747,204
	지자체	8,593	29,689,356	93,064,856
	새만금개발청	7	419,997	435,110
	합계	9,033	45,506,853	103,247,170
2020	지방청	425	22,779,761	14,947,794
	지자체	8,742	25,126,193	40,163,978
	새만금개발청	4	1,231,378	1,450,701
	합계	9,171	49,137,332	56,562,473
2021	지방청	516	8,175,321	26,872,181
	지자체	10,340	44,005,820	19,367,924
	새만금개발청	9	11,849,809	6,592,217
	합계	10,865	64,030,950	52,832,322
2022	지방청	446	4,780,868	27,348,148
	지자체	9,423	91,263,089	73,994,085
	새만금개발청	10	10,597,127	0
	합계	9,879	106,138,793	101,342,233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2]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비교(요약)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⁴⁾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주요 제외대상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소(유예)기업, 대기업, 금융·보험 및 연금업 영위 기업	-
기준 조건	4개 모두 충족(AND)	4개 중 1개 충족(OR)	2개 중 1개 충족(OR)
규모기준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이하	①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규모기준 초과 (금융·보험 및 연금업 제외)	①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포함) 소속회사 ※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아닌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중견기업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음
	② 자산총액 5천억원 미만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독립성 기준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이하	③ 관계기업 합산 평균매출액 등이 주된 업종별 규모기준 초과	② 「공정거래법 시행령」제 38조 제2항에 따른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인 자산총액 이상인 기업·법인(외국법인 및 비영리법인 포함)이 직·간접 최대출자자인 기업 ※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채권 금융기관이 최대출자자인 기업 제외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이 아닐 것	④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직·간접 최다출자자인 기업	
확인방법	중소기업 확인서	중견기업 확인서	기업집단 편입 및 제외 공문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sminfo.mss.go.kr)	중견기업 정보마당 (www.mme.or.kr)	기업집단포털 (www.egroup.go.kr)
담당 및 문의	지방중소벤처기업청 (www.mss.go.kr - 지방청)	한국중견기업연합회 (www.fomek.or.kr)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www.ftc.go.kr)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통계분석과 (www.mss.go.kr)	산업통상자원부 중견기업정책과 (www.motie.go.kr)	
관련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료: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2022.2., 8쪽

4) 산업통상자원부·한국중견기업연합회, 「알기 쉽게 풀어 쓴 중견기업 범위해설」, 2022.2.
<<https://www.mme.or.kr/PGHI0020.do>>